

의안번호	2217155
의 퇴 인	채현일의원
회 답 일	2026.5.27.
추계번호	26D1151

선거교육지원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선거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300만원(연평균 1,46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선거교육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43	-	-	-	-	43	-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안 제13조)	30	-	-	-	-	30	-
합계	73	-	-	-	-	73	14.6

주: 본 추계는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 시행 이후 결정되는 지원 대상·지원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7조(선거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5년마다 선거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연수원의 장(이하 “선거연수원장”이라 함)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선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선거교육담당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0조(선거교육진흥원 설립 등)	선거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교육진흥원을 설립함	의무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1조(선거교육 연구·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교육 정책과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음 지원·육성 대상인 기관·단체의 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재량규정
7	안 제12조(선거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3조(학교 선거교육의 진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에게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9	안 제14조(사회 선거교육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6조(국제교류·협력 증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선언적·권고적인 성격의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	안 제7조(선거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3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미대상: 선거연수원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선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선거연수원장이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 또한 선거연수원장이 현재의 조직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안 제9조(선거교육담당관)	—	미대상: 개정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안 제10조(선거교육진흥원 설립 등)	×	제정안에 따라 선거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연수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연수원과 제정안에 따른 선거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업무 조정·업무위탁·업무대행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상세 규정, 계획 등이 부존재하여 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참고> • 제정안에 따른 <u>진흥원의 업무</u>는 다음과 같음 — 학교, 선거교육 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 선거교육 전문인력 및 민간 선거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선거교육의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연수 지원 — 선거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 — 온라인선거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u>현행법 상 선거연수원의 분장 사무</u>는 다음과 같음 — 연간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 학회·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연수시설·장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u> —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 일반 국민·공무원·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 직무교육·연수프로그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u>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u> — 교육·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6	안 제11조(선거교육 연구·개발)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교육 정책과 방법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지원·육성 대상인 기관·단체의 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12조(선거교육 전문인력 양성)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매년 “선거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3회 실시, 1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8	안 제13조(학교 선거교육의 진흥)	○	(실태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정안에 따라 교원에게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지원내용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2026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직무연수(집합교육, 2박 3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 선거교육(1일 과정) 과정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선거연수원에서 자체 제작한 선거교육 콘텐츠를 각 학교 교원들이 학교 선거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오고 있음
9	안 제14조(사회 선거교육 지원)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정안에 따라 사회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및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 지원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0	안 제16조(국제교류·협력 증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안에 따라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 지원 대상·지원 범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7조에 따른 선거교육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한 교육 관련 종합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3조에 따른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평균 예산액을 준용함
 - 실태조사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를 적용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년 3월 기준,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1	2.3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선거교육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3백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교육부에서 최근 실시한 교육진흥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38백만원)²⁾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2] 선거교육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선거교육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43	-	-	-	-	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 실시(안 제13조)

- 안 제13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0백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안 제13조에 따른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평균 예산액을 준용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 모델 연구(2021년, 27백만원)」, 「미래유권자 선거학교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2021년, 30백만원)」, 「청소년 선거교육 프로그램 개발(2022년, 30백만원)」, 「사회적 약자 선거프로그램 개발(2023년, 22백만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구용역 평균 예산액은 27백만원, 위 금액을 2023년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7년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가재정소요는 30백만원임

2) 교육부의 교육진흥 관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자료: prism.go.kr)

-2017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48백만원), 2022년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30백만원)의 평균금액 38백만원을 2022년 금액으로 보고, 2023년~202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7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3백만원 산출

- 실태조사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 (안 제13조)	30	-	-	-	-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선거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선거교육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43	-	-	-	-	43
학교 선거교육 실태조사 (안 제13조)	30	-	-	-	-	30
합계	73	-	-	-	-	73

주: 본 추계는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 시행 이후 결정되는 지원 대상·지원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고,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